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76 발의연월일: 2020. 9. 17.

발 의 자:이상헌・신정훈・문진석

김민석 • 이용빈 • 김병욱

신동근 · 송영길 · 박재호

조승래 · 김영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함. 그러나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'몸짱약품류'가 최근 온·오프라인 상에서 널리판매되고 있음. 이 약품류는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 또한 심각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의약품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함(안 제47조제1항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의약품의 소비자는 제44조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5조제1항제8호 중 "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은"을 "제47조제1항제3호 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는"으로 한다.

법률 제1720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98조제1항제7호의2부터 제7호의9까지를 각각 제7호의3부터 제7호의10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제4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 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(의약품등의 판매 질서) ①	제47조(의약품등의 판매 질서) 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	
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	
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	
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의약품의 소비자는 제44조에
	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
	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
	품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
	<u>다.</u>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95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	제95조(벌칙) ①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	
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	
하의 벌금에 처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제47조제1항(<u>제47조제1항제3</u>	8 <u>제47조제1항제3</u>
호나목은 제외하며, 제44조의	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는
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	
포함한다)ㆍ제4항 또는 제85	
조제9항을 위반한 자	

8의2. ~ 12. (생략)

② (생략)

법률 제1720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

제9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제98조(과태료)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7. (생략) <신 설>

7의2. ~ 7의9. (생략)

8. ~ 11. (생략)

② (생략)

8의2. ~ 1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법률 제1720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

1190公(叶대丘) ①	

- 1. ~ 7. (현행과 같음)
- 7의2. 제47조제1항제5호를 위반 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 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 품을 구매한 자
- 7의3. ~ 7의10. (현행 제7호의 2부터 제7호의9까지와 같음)
- 8. ~ 11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